

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심사보고 (의안번호 제34호, 2004. 9. 7)

총무위원회
2004. 9. 17

1. 심사 경과

- 가. 2004. 9. 7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9. 7 :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의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 설명(문화관광과장 정대환)

가. 제정 이유

○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. 공연, 전시 및 문화보급·전수 등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물 범위를 정함
 - 공동주택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위락시설, 병원, 공연장 및 집회장
- 2).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 - 구성 : 위원장(부시장)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
 - 임기 : 2년(연임가능)
 - 기능 : 미술장식 가격, 미술장식의 예술성,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,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,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미술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
- 3).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정함
 -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이전까지
- 4). 미술장식 설치완료 시기를 정함
 - 건축물의사용승인 신청 이전까지
- 5).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
 -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3/1000 이상
 - 영 제2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: 5/1000 이상

3. 관계 법령

-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, 건축법.

4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
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,
 -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
 -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그리고 미술장식의 설치절차·방법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고
 -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,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,000분의1이상 1,000분의 7이하로, 그 외 건축물은 1,000분의 5이상 1,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제정조례(안)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한 것으로서
 - 본 조례안 중 주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제12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1,000분의 3으로 하고 그 외 건축물은 1000분의 5로 규정 하였는바 이는 타 시·군의 적용비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 - 경남도 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지역 중 시는 창원시를 비롯한 8개시 이며(미제정시 : 사천, 밀양), 군은 함안군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(2004. 9. 14현재), 그중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
 - 공동주택은 1,000분의 1을 적용한 지역이 6개시·군(창원, 마산, 진해, 김해, 양산, 함안)이며, 1,000분의 3을 적용한 지역은 3개시(진주, 통영,거제)이고.
 - 그 외 건축물은 1,000분의 5를 적용하는 지역이 6개시·군(마산, 통영, 진해, 거제, 양산, 함안)이고, 1,000분의 7을 적용한 지역은 3개시(창원, 진주, 김해)임.
 - 그 외 다른 조항은 조례전문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.
- 본 제정조례(안)은 2004. 8. 3 ~ 8. 25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조례의 구성 및 체계, 용어의 사용 등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위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김석관 위원	미술장식품 설치대상건물에 설치해야할 미술장식품의 선정은 누가 하는지?	문화관광과장 정대환	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미 술장식품의 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.
이문상 위원	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 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1,000분의3을 적용한 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니 1,000 분의 1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은?	“	현재 미술품이 사실상 고가 로서 100억짜리 건축물에 대 한 미술장식품의 설치비용이 3,000만원으로서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진주, 통영, 거제시가 1,000분의 3 을 적용하고 있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 음